

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290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24. 10. 16.
4. 회부일자 : 2024. 10. 18.

II. 제안이유

- 시민 독서문화 기반을 확충하고 정보 접근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강서도서관 분관을 설치('25.3월 예정)하고, 그 명칭 및 소재지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

III. 주요내용

- 강서도서관 분관 명칭 및 소재지 조항 신설(안 제38조 및 [별표 7])
 - 분관명: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 가양관
 - 소재지: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5길 22 (가양동)

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[별첨 6]
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
- 「도서관법」 제4조, 제29조
- 「건축법」 제22조
-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제1조, 제3조, 제35조, 제36조, 제37조

2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(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[별첨 2])

3. 협의: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음

4. 기타

-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: [별첨 1]
- 입법예고(2024.9.5.~ 2024.9.25.) 결과: 의견없음
- 교육규제심사: 해당 없음
- 부패영향평가: [별첨 3]
- 성별영향평가: 제외통보 확인서 [별첨 4]
- 학생인권영향평가: 검토 의견서 [별첨 5]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심혁보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290호로 제출되어 2024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강서도서관 분관 설치 예정(2025년 3월)에 따른 명칭 및 소재지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서도서관 분관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(안 제 38조) 및 명칭과 위치(안 [별표 7])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폐교된 공진초등학교 부지 중 서진학교를 제외한 교사동 일부를 활용하여 강서도서관 분관을 설립 추진 중에 있으며, 이는 서진학교 설립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과의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협의의 결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¹⁾.

이를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7월에 자체투자심사, 2023년 10월에 공유재산심의 등²⁾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.

또한 이와 같은 도서관 분관의 설립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2조³⁾ 및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

1)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(2019.7.26.). 서울서진학교 주민·청소년 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(안).

2) 동 분관 설립 사업비는 총 1,382,510천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은 아님

3) 제32조(교육기관의 설치)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관한 규정」에 의해 교육감이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조직편성권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행사하는 것인바⁴⁾,

사업 취지면이나 법적·절차적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[표-1] 강서도서관 분관 층별 운영 현황⁵⁾

구분	층별 현황
1층	그린라운지, 어르신강의실, 생태환경실, 스마트가든월
2층	가족자료실, 어린이자료실(유아실), 강의실(버들치), 시민커뮤니티실
3층	청소년자료실, 메이킹존, 생태그린존
4층	디지털미디어랩, Youth Zone(동아리방), 누리숲소극장, 강의실 2실(설앵초, 종다리)

-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은 제출시 동 분관의 개관일을 2025년 3월로 판단하여 이를 제안이유에 명시하였으나, 현재 해당 분관의 공정률은 56%에 불과합니다.

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공사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요청과 강서구청 사용승인검사 기간(1개월 이상) 소요를 이유로 당초 3월로 계획했던 개관일을 5월 이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⁶⁾.

그러나 이마저도 시공사와 계약기간이 조율되어야 정확한 공사기간 및 개관일이 확정될 수 있는바, 이와 같은 불확실한 개관일을 근거

4) 제12조(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)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·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,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5)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(2024.10.). ‘강서도서관 가양관 설립 현황 보고’ 자료.

6)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(2024.10.). (가칭)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 가양관 개관 운영 기본 계획안.

로 동 조례안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의 명확성 및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인바, 가양도서관 분관 설치에 관한 사항은 공사일정 및 개관일이 명확히 확정되고 난 이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

[표-2] 강서도서관 분관 사전절차 이행 및 공정율 현황

시설명	자체투자 심사	공유재산심의회	공정율(%) ('24.12.9.기준)
강서도서관 가양 분관	'20.6.	'20.7.	56

-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의안심사지원팀장	정진국(2180-8263)	입법조사관	이가영(2180-8270)
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